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08나2149 구상금
원고, 항소인	○○보험회사
피고, 피항소인	○○ 택시회사
제1심 판결	부산지방법원 2008. 1. 8. 선고 ○○가단○○ 판결
변 론 종 결	2008. 4. 25.
판 결 선 고	2008. 6. 13.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피고는 원고에게 4,1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. 11. 18.부터 2008. 6. 1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○○○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,93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. 11. 18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,1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. 11. 18.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1, 2, 3호증, 갑4호증의 1 내지 9, 12, 14, 16, 17, 19, 22, 32, 갑5호증의 1, 2, 갑6호증, 갑7호증의 1 내지 205, 갑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갑4호증의 33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A회사(이하 'A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,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리스한 B회사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인 부산 ○○리○○○○호 승용차(이하 '이 사건 자동차'라 한다)에 관하여, 피보험자 A회사, 보험기간 2004. 6. 29. 24:00부터 2005. 6. 29. 24:00까지,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위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을 포함하는 업무용자동차보

협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또 제1심 공동피고 ○○○은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○○바○○○○호 택시(이하 '피고측 택시'라 한다)에 관하여 대물배상 공제한도를 2,000만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, C는 피고에 고용된 운전기사이다.

나. 피고의 택시기사인 C는 2005. 5. 11. 14:00경 피고측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양운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중동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,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C의 맞은편 대동아파트 방면에서 장산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(A회사의 대표이사의 처임) 운전의 이 사건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측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, 위 자동차에 순수 수리비 4,175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18만 원 도합 4,5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다. 이에 원고는 2005. 11. 17. 자기차량손해보험금지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로 수리업체인 ○○ 주식회사에 4,593만 원(부가가치세 418만 원 포함)을 지급하였다.

2.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는, 피고는 원고가 위 수리업체에 지급한 수리비 전액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,59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은 B회사를 위한 보험인데, 피보험자인 B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418만 원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인 B회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어 B회사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418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(1) 이 사건의 쟁점

(가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는 C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, 피고는 피고측 택시의 운행자로서 A회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인 45,930,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, A회사를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A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.

(나) 그런데 피고도 사고의 경위나 수리비 자체에 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고,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B회사를 위한 보험임을 전제로 B회사는 위 자동차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, 과연 원고가 수리업체에 지급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,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만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.

(2) 그러므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고가 구상할 수 없는 손해인지 여

부에 관하여 본다.

(가)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인 경우, 보험사고로 파손된 피보험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, 피보험자가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를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다8155 판결 참조).

그런데 위 1. 가. 항에서 본 바와 같이,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비록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B회사이지만 A회사가 이를 리스하여 A회사가 피보험자로서 위 자동차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, 또 리스차량은 리스회사가 아닌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가 그 차량에 관하여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므로, 이는 리스차량을 리스한 자가 자기가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 차량수리비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,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위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가 차량소유자인 리스회사를 위하여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거나 리스회사가 체결한 보험으로 볼 수는 없다. 따라서 이러한 리스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리스차량을 리스한 자가 그 차량의 사용 중 입은 차량수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, 그 차량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, 보험회사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가 제3자에 대

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,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자 즉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B회사가 아니라 위 자동차를 리스하여 보험에 가입한 A회사를 위한 보험이므로, 위 자기차량손해보험이 B회사를 위한 보험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.

(나)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피보험자인 A회사를 기준으로 한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, A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,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는 A회사가 위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, A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보건대,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·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,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-60-1에서 위 "영업용"이라 함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, 여기에는 운수업자의 운수용승용자동차, 자동차매매업자(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포함한다)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소형승용자동차는 그 자동차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데, A회사가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A회사가

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어,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.

(다)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418만 원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지 여부를 B회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,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 리스 등을 영업으로 하는 B회사는 리스이용자인 A회사에게 제공하는 금융(구입비용 및 부대비용)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,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, 설령 B회사가 매입자로 된 4,593만 원(부가가치세 418만 원)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, 418만 원의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에게, (1) 피고는 순수 수리비 4,1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5. 11. 18.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. 1. 8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[제1심 판결에서는 위 (1)항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,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인용되지 못한 부가가치세 418만 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함에 따라,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부가가치세 418만 원 부분으로 되었다], (2) 피고는 부가가치세 41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5. 11. 18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. 6. 13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 중 위 (2)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(2)항과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고규정 _____

 판사 정동진 _____

 판사 장유진 _____